

제261회 거창군의회의 임시회

조 례 안 상 정  
(3건)

거 창 군

#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2-1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
2022-2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	15
2022-3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농업기술센터)	19

#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 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와 중앙·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이 제 때에 반영되지 못해 시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조례상 인용 조문이나 용어 등을 일괄정비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일괄개정 조례 조문: 57개

나. 내용

1)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

2) 기본조례 개정으로 인한 인용 용어 변경

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3) 중앙 또는 거창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가) 실과, 기획감사실 ⇒ 담당관·과, 기획예산담당관

나) 진주보훈지청장 ⇒ 서부보훈지청장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부서 합의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12. 28.~2022. 1. 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10조제2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을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2조(「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과·사업소장,”을 “담당관·과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법 제8조”로 한다.

제6조(「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7조(「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8조(「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한다.

제9조(「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거창군정 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 위원회”로 한다.

제12조(「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의 개정) 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3조(「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의 개정)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 위원회”로 한다.

제14조(「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4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5조(「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6조(「거창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72조의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로 한다.

제17조(「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거창군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규정」”을 “「거창군 민원처리의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본청실과장”을 “본청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8조(「거창군 조례제정·폐기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조례제정·폐기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19세 이상”을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19조(「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의 개정)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0조(「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8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로 한다.

제21조(「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 조례」의 개정) 거창군 행정리개발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이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 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3조(「거창군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로 한다.

제17조 중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를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로 한다.

**제24조(「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의 개정)**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5조(「거창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를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을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를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7조(「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8조(「거창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의 개정) 거창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온천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실과장급 이상”을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중 “「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9조(「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0조(「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및 거창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및 거창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1조(「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2조(「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경상남도 거창군교육청 교육장”을 “경상남도 거창교육 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경상남도진주보훈지청장”을 “경상남도 서부보훈지청장”으로 한다.

제33조(「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4조(「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5조(「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제11조제1호 중 “구판장”을 “생활용품 판매장”으로 한다.

제36조(「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담당실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7조(「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로 한다.

제38조(「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의 개정) 거창군 에너지자립 도시 조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3조에 따라”를 “이 조례는”으로 한다.

제39조(「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로 한다.

제40조(「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41조(「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42조(「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43조(「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3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4조(「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국군기무부대관계자”를 “339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으로 한다.

제45조(「거창군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6조(「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47조(「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8조(「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9조(「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의 개정)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0조(「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1조(「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52조(「거창군 헌혈장려 조례」의 개정)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53조(「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한다.

제54조(「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의 개정)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을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제55조(「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으로 한다.

제56조(「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57조(「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조례 제2679호(시행 2021. 9. 29.) 개정과 관련하여 구 조례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일부 태양광발전사업자의 보호가 문제되어 그들의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고자 소급적용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함(안  
조례 제2679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 1) 현행: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 변경: 제20조의3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가목(3) 본문
- 3)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11. 17.~12. 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679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3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부칙(조례 제2679호 시행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조례 제2679호 시행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3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핵심적인 부분인 거창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전체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군수 등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거창푸드 육성·지원계획을 정함(안 제4조)

1) 지원계획 심의기구 변경: 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 ⇒ 먹거리 위원회  
다. 거창푸드 생산, 가공, 유통, 소비를 정함(안 제5조~제8조)

라. 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 및 위탁 근거를 정함(안 제9조)

마.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위원회 신설함(안 제10조)

바. 거창푸드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7조)

1) 신설: 인증심사원, 인증심의위원회, 인증의 홍보·지원

2) 검사비용 지원, 인증신청, 인증대상 품목 및 요건, 인증표시, 인증취소 등  
사. 재정지원을 정함(안 제18조)

아. 체험농장 및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정함(안 제19조)

자. 거창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안 제20조)

차. 거창푸드정보시스템을 정함(안 제21조)

1) 거창푸드 인증 등의 정보 제공

카. 사문화되어 실효성이 없거나 법령 재기재 규정 등 삭제

1) 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현행 제5조~제14조)

2) 거창푸드인증지원센터의 지정 등(현행 제21조)

3) 사용자 지정 및 마일리지 제공(현행 제27조)

4) 위탁운영의 세부내용, 위탁취소, 시행규칙(현행 제29조·제30조, 제3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2년도 예산 387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11. 10.~11. 3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거창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보장, 농촌환경의 보존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푸드(Geochang Food)”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을 보장하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산물

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거창푸드(이하 “인증식품”이라 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식생활 교육·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소비주체로서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식품의 건전하고 선량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거창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통해 농업의 안정과 군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거창푸드 이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군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거창푸드 육성·지원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거창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3. 거창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
4. 인증
5. 거창푸드 품질관리
6. 그 밖에 거창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거창푸드 생산)** ① 거창푸드 생산은 소량 다품목 방식으로 지역 농업인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농업과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육성과 건전한 생산자 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거창푸드 가공)** ① 거창푸드 가공은 같은 업종의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거창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과 산업·학교·연구소가 상호 연계를 통해 참여하는 집적단지화를 적극 육성·지원해야 한다.



제7조(거창푸드 유통) ① 거창푸드 유통은 같은 업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거창푸드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거창푸드 발전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8조(거창푸드 소비) ① 거창푸드는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에 따른 급식에 우선 소비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식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소비자에게 생산자와 재배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실제 이동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운영) ①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창푸드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거창푸드의 전시·판매 및 마케팅
2. 거창푸드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 및 저장
3. 인터넷을 통한 거창푸드 홍보와 판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거창푸드업무 부서장
2. 농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인증 신청 등)** ① 군수는 거창푸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인증제를 실시한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인증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검사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인증대상 품목 및 요건)** 인증은 농산물, 농산물가공품을 대상으로 하고 그 세부 품목 및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인증심사원)** ① 군수는 원활한 인증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을 둘 수 있다.

1.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용수 등 시료 채취

2. 현장심사

3. 유통 중인 인증식품 시료 채취

② 인증심사원의 자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인증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증 여부

2. 인증표시 정지 및 인증취소

3. 그 밖에 인증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거창푸드업무 부서장

2.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그 밖에 심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인증표시)** 인증식품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식품임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하고, 그 표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인증취소 등)** ①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인증표시 정지,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1. 규칙으로 정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 인증받은 자가 인증식품의 품질과 생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17조(인증의 홍보·지원)** ① 군수는 인증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거창푸드 생산자·가공자·유통자·소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예산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에 대한 교육
2. 인증식품 소비촉진 및 판로확보
3. 인증식품 품질의 표준화 및 브랜드화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지원)** 군수는 센터 및 거창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푸드 상품화, 선전, 판매, 운반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체험농장 및 농업인 직거래장터)** ① 군수는 군의 유휴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거창푸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주민과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정해진 날에 거창푸드 등을 판매하는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거창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① 군수는 특정 거창푸드의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품질의 안전성이 검증된 농산물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거창푸드 관련 정보·인력·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21조(거창푸드정보시스템)** 군수는 군민에게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과정과 인증 등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푸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거창푸드종합센터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탁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거창푸드 육성·지원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제9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거창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요인: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운영비, 로컬푸드 재정지원비, 인증 심사원, 인증 홍보·지원, 인증에 필요한 검사비, 위원회 수당, 거창푸드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등  
나. 관련조문: 제9조, 제10조~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군비	387.5	442.2	405.6	405.6	405.6	2,046.5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로컬푸드 택배비 지원: 30,000천원
2. 로컬푸드 마케팅 지원: 20,000천원
3. 거창푸드 품질관리 및 유통 활성화 지원: 20,000천원
4.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지원: 218,000천원
5. 거창몰 운영지원: 76,000천원
6. 인증 검사비: 200,000원x100건=20,000천원(2023년 하반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분석실 개소로 자체 검사 가능)
7. 전담 인력 인건비(1명): 34,788천원(2022년 최저임금 기준)
8. 위원회 수당: 2,520천원
9. 인증 교육비: 5,000원x100명x2회=1,000천원
10. 거창푸드통합정보시스템
  - 가. 구축비: 20,000천원
  - 나. 운영비: 3,400천원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